법무법인 산하

층간소음 상담가 양성교육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 법령

법무법인 산하 부대표 변호사 김 미 란

법무법인 산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5, 11층 (역삼동, 산하LAW타워)

대표 전화번호(02-537-3322)

층간소음 문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서 아랫집에 '칼부림'

송고시간 | 2019-10-28 15:05

입력 2019-05-05 15:48 수정 2019-05-05 15:48

"조용히 해달라" 층간소음

입력 2021.05

(수원=

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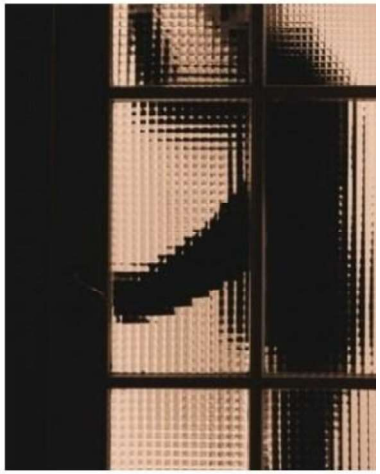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신부 폭

[제작 정

"조용히 해달라"며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8

60대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

A 씨는

에 올라가 B 씨의 머리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자인 A씨도 경상으

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

EWSIS 지방 > 제주

간소음, 아파트 위층 부부에게 소화기 던진 40대

대법, '층간소음 민원' 문제로 70대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 징역 18년 확정

이지성 기자 | 2020-02-07 10:21:19 | 사회일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며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산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5, 11층 (역삼동, 산하LAW타워)

대표 전화번호(02-537-3322)

층간소음 관련 뉴스-형사범죄 사례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男 검찰 송치...기자 질문에 '묵묵부답'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2021.11.24 08:5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408383174211&type=1 기사주소 복사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가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씨(4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부터 피해자

법무법인 산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5, 11층 (역삼동, 산하LAW타워)
대표 전화번호(02-537-3322)

강의 순서

-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례
- 층간소음 관련 **민사** 판례
- 층간소음 관련 **가처분**
- 층간소음 관련 **법령**과 **제도**

법무법인 산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5, 11층 (역삼동, 산하LAW타워)
대표 전화번호(02-537-3322)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5, 11층 (역삼동, 산하LAW타워)
대표 전화번호(02-537-3322)

층간소음 관련 형사판례 개관

범죄의 성립요건

형사절차의 개관

형법규정 형사판례

층간소음 분쟁의 심각성

나도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산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5, 11층 (역삼동, 산하LAW타워)

대표 전화번호(02-537-3322)

범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죄형법정주의

정당방위

심신장애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절차의 개관

형사절차 개관
수사
[경찰.검찰]
기소
[검찰]
재판
[법원]
불구속
고소,고발
참고인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재정신청
선고유예
집행유예
증언

살인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0노0000 살인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경동맥을 절단시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얼굴 및 가슴 부위를 11회 가량 찌르고 내리쳐 살해.

징역 8년

살인죄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00 살인

피고인이 내연녀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가족(부모, 설을 쇠러 온 아들 2명)과 다투다가, 20cm 길이 과도로 아들 2명을 각 9회, 5회 힘껏 찔러 살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의 의견: 사형 1명, 무기징역 6명, 징역 35년 2명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39년 3월, 무기징역

범죄 동기, 범행 준비, 범행 수법, 사회적 비난가능성,
범행 이후 정황, 유족의 고통, 피해 회복조치 여부 등 고려

무기징역

살인죄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3노000 살인미수

▶피고인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일에도 잠을 자지 못하여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음.

▶ 피고인은 층간 소음에 따른 스트레스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관리소장은 누구로부터도 층간 소음으로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층간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했던 흔적이 없어 보임.

징역 4년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판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 000 특수주거침입미수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에 걸려 있던 이중 안전고리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침.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판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정000 폭처법위반

남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세요"라고 수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퇴거불응.

각 벌금
80만 원
40만 원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

입력 2018.05.31 1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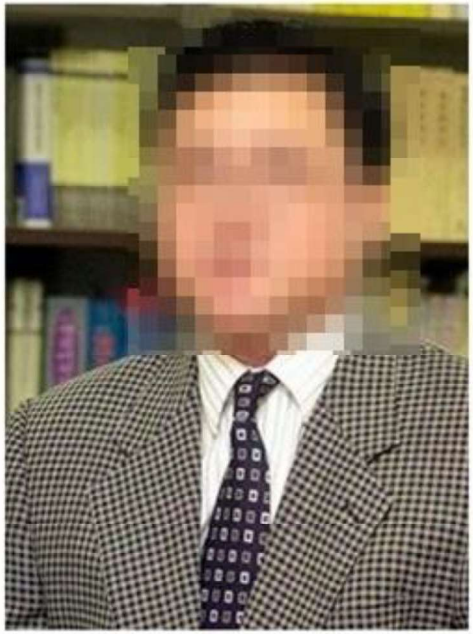

판사 시절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redacted](49·사진·사법연수원23기) 전 부장판사가 퇴직 5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자로 변호사가 됐다"며 "응원해 주고, 격려해준 트친(트위터 친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적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소속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2012년 1월엔 '부러진 화살'로 영화화된 '석궁 테러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당시 합의 내용을 공개한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징계를 받았다.

2013년 5월에는 층간 소음으로 관계가 좋지 않던 이웃집 차량의 열쇠 구멍에 강력 접착제를 바르고 바퀴에 못을 박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자 다음 달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의 징계 전력 등을 들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재물손괴죄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3노000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계속 소음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2011. 12. 18.부터 2012. 2. 16.까지 총 4회), 소주병을 던져 깨뜨림(2012. 1. 5.부터 2012. 2. 16.까지 총 18회)

▶ 재물손괴: 피해자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려 문에 얼룩이 생기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냄새, 얼룩 등으로 적어도 일시적으로 사실상,감정상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 협박: 소주병을 현관문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 [피해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거나 아침에 소주병 파편을 발견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불안감과 공포심에 고통을 겪음]

징역 8월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000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은 윗집 층간소음이 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관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각 계단 유리창문 11개를 때려 깨뜨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가 위 재물손괴 경위에 대해 물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B**의 어깨를 2회 밀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벌금 200만 원

현주건조물방화죄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1고합000 현주건조물방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앙심을 품고, 소주병에 휴지뭉치와 휘발유를 넣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라이터로 휴지뭉치 심지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집 현관 안쪽 바닥으로 소주병을 던져, 현관출입문과 신발장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방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 특수협박죄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1노0000 협박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층간소음이 부른 살인'이란 제목의 인터넷뉴스 기사를 부착하여 협박.

벌금 30만원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0000 폭처법위반

▶ 피해자에게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의 아이들이 뛰는 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협박. → 특수폭행: 반의사불벌죄X

▶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

징역6월 집행유예

과실치상죄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정0000 과실치상

피고인은 아래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철제 현관문을 닫으면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문을 닫아, 그로 인해 피해자의 팔꿈치가 부딪혀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

벌금 50만원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000 과실치상 (위 사건 항소심)

평소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파손하는 등으로 항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면을 피해왔음.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놀라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팔꿈치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것까지 예상하고 회피할 주의의무는 없음

무죄

문제상황

▶ 우퍼를 설치하여 보복할 경우 범죄 성립?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판결요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상황

[판결이유]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도 같은 년, 표절가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욕설을 한 행위 또는 그 전화녹음을 듣게 한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사실심이 그 전화 대화를 폭행으로 단정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청각기관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전화 대화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내는 등의 심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파기환송

문제상황

▶ 온라인에서 10만원 후반에 판매되는 '층간 소음 보복 스피커'

- 천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8인치 크기의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
-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에 연결해 소리 등을 위층에 전달
-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하고 출근. 10시간 넘게 작동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즉결심판: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벌금 10만 원

법무법인 산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5, 11층 (역삼동, 산하LAW타워)
대표 전화번호(02-537-3322)

문제상황

▶ 층간소음에 따른 고통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는 없는가?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문제상황

[판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살인]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

피고인들이 사전에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살해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나 목적을 참작하여도 그러하다.

피고인: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상피고인:
징역 6년

문제상황

▶ 층간소음 분쟁상황에서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만을 한 경우?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 출판물에 의하여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제상황

[판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명예훼손]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이혼소송에서 남편의 친구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준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 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공연성 결여 → 무죄

문제상황

[판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명예훼손]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1. 저 망할년 저기오네
2. 함량 미달의 듣보잡
3. 전 임차인대표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4. 부모가 그런 것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1. 모욕
2. 모욕
3. 모욕X
4. 모욕X –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층간소음 관련 민사 판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5, 11층 (역삼동, 산하LAW타워)
대표 전화번호(02-537-3322)

민사상 구제수단

위자료 청구소송

- 민법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층간소음을 유발한 자에게 청구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집합건물법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

민사절차의 개관

법무법인 산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5, 11층 (역삼동, 산하LAW타워)
대표 전화번호(02-537-3322)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인과관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위법성 판단?
- ▶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 ▶ 증명은 어떻게?
- ▶ 수인한도론
- ▶ 원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자)
- ▶ 감정? 녹음,촬영? 소음측정앱?

법무법인 산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5, 11층 (역삼동, 산하LAW타워)
대표 전화번호(02-537-3322)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